

---

## 중 합 토 론

사회 이 민 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부장판사)

---



## 종합토론

---

### ○ 김 상 수 (발제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서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식에 기초한 분쟁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김정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한 조정에 있어 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러한 점이 행정형 ADR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윤식 판사님의 의견은 법원도 ADR에 대해 긍정적이며 법원부속형 내지 법원연계형 ADR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쏟고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법원과 ADR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홍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ADR기관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에 따라 시효중단효가 적용되는 권리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ADR기관들의 통일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제시가 민법개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께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 제도와 편면적 중재제도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면적 중재는 중재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언론중재법상의 직권조정결정과 편면적 중재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원부속ADR이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민사조정법을 개정하여 법원은 대법원이 인증한 조정기구에 민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면적 중재는 현재로서는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편면적 중재를 받겠다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ADR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당사자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이 경시되는 소위 '2급정의'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가 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어

는 정도 만족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DR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분쟁해결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결합적 조정중재(Med-Arb)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재의 최대 약점은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겠다는 조항이 삽입된 계약형 분쟁의 경우 중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불법행위 유형의 분쟁의 경우 중재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편면적 중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 박 순 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조사관)

조정제도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와 지정토론 내용을 듣다보니 ADR의 주 모델은 재판관이 조정절차를 주도하는 사법형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정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보다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황 덕 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내용상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송보다는 ADR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한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소송건수와 조정건수는 약 130여 만 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90여 만 건입니다. 두 나라의 인구비율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원 분쟁건수는 일본의 4배(소송건수는 일본의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심해집니다. 일본의 경우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약 15%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건수 대비 조정건수가 0.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송일변도적인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 간의 의식차이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는 분쟁당사자의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부분의 분쟁당사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든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든지 또는 사회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관주도형

분쟁해결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ADR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과정에 있어 이러한 대결주의적인 국민의식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ADR관련 절차나 ADR의 결과에 대한 효력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앞서 박순미 조사관께서 제기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염 규 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ADR의 경우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ADR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정 조서에 재판에 따른 기판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정도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R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일반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조정 제도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 ○ **박 영 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분쟁조정인증팀 수석)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거래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현재까지만 거래규모가 약 630조에 달하고 있고 전체 거래의 25%가 전자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관련 분쟁의 조정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의 일선에서 접한 전자거래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10~20만원 사이 상품의 반품 관련 분쟁입니다. 문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화해계약의 효력밖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당사자 중 한 쪽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커다고 생각합니다.

### ○ **장 수 태** (지정토론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다행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고 있지만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 권위원회 박순미 조사관계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순수한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있는 분쟁에 객관적인 제3자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안 자체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의 효력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오늘 발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법원과 ADR의 연계나 앞서의 박영희 수석께서 밝힌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조정제도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서 정 일 (지정토론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박순미 조사관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ADR은 무엇보다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 ADR은 민간주도형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앞서 염규석 분쟁조정실장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사상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조정합의를 하면서 ‘만일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중재기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순수 민간형 ADR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을 시도, 합의를 이뤄내되, 만일 합의사항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 ○ 김 정 탁 (지정토론자, 언론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당사자가 민사상 합의의 효력만 부여받는 조정결과에 예를 들어 “만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합의조항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합의조항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위원들이 분쟁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조정과정에서 조정인들이 법원의 판례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안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보여준다면 당사자들이 사안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서 정 일

중재법상의 중재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계약서상 문언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한정됩니다.

## ○ 염 규 석

조정결과에 대해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아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ADR의 발전방향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면 굳이 조정을 거친 후에 단순히 불이행의 문제로 인해 다른 기관의 중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도 여러모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 ○ 황 덕 남

조정후 실효성의 확보문제는 조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소송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판결을 받아놓고도 이행이 빨리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1억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보다 자기 손에 실질적으로 1천만원의 금전이 쥐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이행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이행을 전제로 피신청인측의 부담을 일부 면제해주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이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박 영 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거래로 인한 분쟁 중 상당수는 10~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 많습니다. 민사상 화해에 해당하는 효력밖에 없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정도 규모의 금전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소비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금액이 소액이기에 재판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결과에 대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아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ADR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클 것입니다.

## ○ 함 윤 식 (지정토론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

물론 10~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 법원이나 법원조정센터로 몰려온다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한편으로 만일 조정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모두 그 소액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가가 분쟁해결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이라는 이유라 거래를 부주의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력까지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홍 승 기 (지정토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저는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효력은 부여되어야 심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직권조정결정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결정밖에 할 수 없는데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조정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ADR의 효력이나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과 같은 부분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모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함 영 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영국에서 개최된 ADR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학자들은 아시아의 조정·중재제도가 아직 원시시대 내지 병하시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 논의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혹은 강제조정과 같은 말은 사실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곤란한 용어입니다. 조정은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당착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정이란 자기가 승복한 것은 스스로 따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쏟았음에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제조정을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정을 최대한 해보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조정의 성격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발제자께서는 ADR기관 간의 연계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연계는 ADR기관들만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조정센터와 같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ADR제도도 이제 분쟁조정 효용성만을 너무 강조하는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의 성공률보다 조정의 만족률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강제로 활성화하겠다는 거나 강제해서 조정의 결과를 빨리 이행토록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론중재위원회가 여러 분쟁조정기관 관계자들을 모신 가운데 ADR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985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민사조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컸고 그로 인해 사법불신이라는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

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발적으로 몇 가지 법률에 산재해 있던 민사관계 조정 조항들을 기초로 민사조정관련 법안을 성안했습니다. 그것이 그 뒤 국회를 통과하여 민사조정법으로 확정되었고 올해 비로소 법원조정센터까지 발족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은 언론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책임자로 일하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책임자로 취임해보니 언론분쟁에 관한 위원회의 조정이 대단히 보람 있고 성공적인 절차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다른 기관에도 파급해서 국민들이 분쟁을 소송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바꾸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다른 기관도 이러한 ADR기구간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체로 ADR기관 간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심포지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협조와 협의에 대한 필요성의 공감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가 우리사회에서 훌륭한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협력과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관은 조정이나 중재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기관은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ADR에 대한 홍보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기관에 대한 소개나 절차안내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승자가 되겠다는 대결적 인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며 문화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DR기관 간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ADR기관 간에 조정절차나 조정결과의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R의 절차나 효과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ADR기관 간의 공통적인 대처나 협조체제를 통해서만 보다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이 효과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보람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DR을 활성화시켜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얼마 전에 인터넷포털 뉴스를 언론조정·중재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 다른 영역에서의 분쟁을 조정과 중재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정과 중재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공동의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